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나697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나6979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가단2340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유재민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호

변론종결 2024. 6. 28.

판결선고 2024. 7. 1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가단23403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54,223,2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54,223,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8. 9. 5. 대출금액 15,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10., 연체이율 15%로 정하고, 2015. 9. 3. 대출금액 20,000,000을 변제기 2022. 9. 3., 연체이율 1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20. 9. 7.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54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9. 1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59,864,988원과 그 중 34,819,861원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11. 28.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2022. 4. 6. 기준 합계 68,259,757원(= 29,346,775원 + 38,912,982원)이다.

다. C의 부(父)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0. 1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 F, G, H이 있다. 위 상속인들은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0.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18. 1. 4. 접수 제7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23. 8. 9. D위원회에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포함한 총 252,762,742원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개인채무조정안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23. 8. 9. C에 대한 D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안이 확정되었고 C이 그에 따라 조정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D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C 사이에 채무조정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C이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여야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고, C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조정 전에 원래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내용대로 상환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소는 원고가 C에 대한 대여금채권 자체를 추심하는 내용의 소가 아니라 C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C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무조정합의만으로 C이 부담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범위 자체가 변경된다거나 원고가 C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더는 유지 또는 진행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¹⁾.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각 변제기인 2015. 12. 10.(2008. 9. 5.자 대여금) 및 2022. 9. 3.(2015. 9. 3.자 대여금)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2020. 9. 10.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C이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C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대부분 마련하여 납입하였고 망인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노고를 고려하여 C을 포함한 피고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C과 피고와의 관계나 C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제1심법원 감정인의 시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7. 28.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3,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인 2018. 2. 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21,772,142원인 사실,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3. 24.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2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C의 상속지분이 2/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은 54,223,247원[=(부동산 가액 320,000,000원 -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1,772,142원) × 상속지분 2/11]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의 한도 내인 위

공동담보가액 54,223,247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54,223,2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54,223,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채, 판사 허일승, 판사 송승훈

별지

1) 다만 채권자가 D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D위원회로부터 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C이 채무조정합의에 의하여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위집행권원을 기초로 피고에 대하여 채무조정 전의 채무금액을 추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